

고용보험료(근로자·예술인·노무제공자 부담분) 반환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7일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·국내거소신고번호)	
	주소	(전화번호:)	
사업장	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		
	상호·법인명	대표자	
	소재지		
근로자·예술인 ·노무제공자 반환신청 금액	고용보험료 과오납(반환) 결정금액 (원) 과오납(반환) 결정금액 중 신청인(근로자·예술인·노무제공자)이 부담한 금액(원)		
근로자·예술인 ·노무제공자 반환신청 사유	☐ 사업주의 사망 ☐ 사업주의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☐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☐ 폐업 후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		
반환금 지급 계좌번호	은행명	계좌번호	
	예금주명		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시행규칙」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료(근로자·예술인·노무제공자 부담분) 반환 신청을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)장 귀하

유의사항

- 고용보험료(근로자·예술인·노무제공자 부담분) 반환은 사업주가 사망, 행방불명 등 사유로 반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, 신청인(근로자·예술인·노무제공자)의 반환신청에 따라 사업주에게 반환할 금액 중 신청인(근로자·예술인·노무제공자)이 부담한 고용보험료(근로자·예술인·노무제공자 부담분)를 반환하는 제도입니다.
- 사업주에게 반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(근로자·예술인·노무제공자)에게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공단은 근로자·예술인·노무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금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합니다.

※ 수령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환수

작성방법

- 근로자·예술인·노무제공자 반환신청 금액은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과오납(반환) 결정금액과 결정금액 중 신청인(근로자·예술인·노무제공자)이 부담한 금액을 작성합니다. 다만, 해당금액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공단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.
- 근로자·예술인·노무제공자 반환 신청사유는 “[]”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
- 반환금이 지급되는 계좌번호는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